

수산물질병관리원 []휴업 []폐업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명칭					
소재지 (전화번호:)					
폐업일자					
휴업기간					
휴업 또는 폐업 사유					
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 사유					

「수산물질병 관리법」 제3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질병관리원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수산물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(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) ※ 폐업신고 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.
------	--

처리절차

